2026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 개요

o 일　　자 : 2026. 4. 10. 금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심의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 정경오(분과위원장), 김상수, 김종원, 김춘식, 이용민 위원

o **심의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박현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심의내용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건(안건번호 제2026-36860호~36939호)

- 심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 · 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2026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4. 14.

분과위원장 정경오

위원 김상수

위원 김종원

위원 김춘식

위원 이용민